



문서번호 : 19-10-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
제 목 : 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
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전송일자 : 2019. 10. 16.(수)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
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2016년 4월 5일 이래 12명의 종업원들은 북측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낯선 자본
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고립과 유기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과 트라우마와
혼란한 심리상태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
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
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기관은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들을 가족
과 재회시키고 신속하게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만
일 가족과 재회한 후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이유로 남한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종업원
이 있을 경우, 이 결정은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처음 재회한 후에, 양쪽
정부가 협력하는 것에 의해 허용된다. 그들의 삶에서 정상 상태가 회복된 후에 독립적이
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함께 발표하
였습니다.

5.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고 17일로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국제진상조사단의 권고, 12명의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 12명 종업원들에 대하여 단순 탈북자로서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특별한 보호와 처우의 조치 등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첨부]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외교통일위원회)

-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

1.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관하여

◎ 배경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a)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기관은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들을 가족과 재회시키고 신속하게 평양으로 송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대한민국 정부(남한), 관련 부처, 검찰기관 및 기타 관련 공무원 및 기관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모든 관계자, 기타 기관, 정치 지도자 또는 중국 Ningbo에서 12명의 젊은 여성 식당 종업원을 집단 납치한 후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서울로 이송하는 음모에 가담했던 허강일을 포함한 대표자 및 개인을 그들의 불법 구금과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c) 이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납치와 가족, 사회와 국가로부터의 정당하지 못한 분리에 의해 야기된 정신적 충격, 두려움과 고뇌, 그리고 그들의 완전히 붕괴된 그들의 삶과 돈을 벌고 정직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12명의 젊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 d)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본질과 정신의 맥락에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언에 의해 양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범해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우선할 가치가 있다.
- e) 만일 가족과 재회한 후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이유로 남한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종업원이 있을 경우, 이 결정은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처음 재회한 후에, 양쪽 정부가 협력하는 것에 의해 허용된다. 그들의 삶에서 정상 상태가 회복된 후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 12명의 여종업원들의 개인적인 결정은 어느 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결정” 또는 “정치적 망명”으로 해석되거나 미디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상황의 희생자들이며, 그들의 가족과 사회를 돕기 위해 중국의 Ningbo에서 살고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납치되고 대한민국(남한)으로 끌려와 두려움에 3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 없이 그들의 가족과 국가의 보호 없이 지속적인 감시 하에 살아야 했다. 인간 본성과 그들을 보호하는 기관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회복되어야만 한다.”

◎ 질의내용

가. 통일부의 위 국제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나. 12명의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재회, 재결합)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 통일부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12명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재회, 재결합)을 위한 대화를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2. 12명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관하여

◎ 배경

2016년 4월 5일 이래 12명의 종업원들은 북측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낮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고립과 유기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과 트라우마와 혼란한 심리상태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질의내용

가. 통일부는 12명 종업원들에 대하여 단순 탈북자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범죄의 피해자로서 특별한 보호와 처우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나. 12명 종업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용의가 있는지